

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4. . .
발 의 자	장미경 의원 외 15인

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장미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4. . .

발 의 자: 장미경·강승수·김근한·김민성
김영길·김영태·김재우·김춘남
박세채·소진혁·양진오·이상호
이정희·장세구·정지원·추은희
의원(16인)

1. 제안이유

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인 마을회관의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활용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3조)
- 나. 토지 및 건축물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의 신축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4조)
- 다.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규정(안 제5조)
- 라. 준용(안 제12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

나. 부서검토: 공공시설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원”을 “지원하거나 해당사업을 직접 시행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마을회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은 신축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총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을 <u>지원</u>할 수 있다. 이 경우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한정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조건)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지원하거나 해당사업을 직접 시행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조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<u>마을회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은 신축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지원기준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지원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④ <u>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
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</p>	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12조(준용) -----</p>

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「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~다. (생략)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~차. (생략)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3조(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,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공공시설과

조 례 명	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▪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(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마을회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와 구미시 소유 마을회관은 신축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(안 제4조)○ 긴급 또는 노후가 심한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등은 시설비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직접 시행(안 제5조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원 체계 정비 및 노후된 마을회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: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○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첨부(붙임)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	

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마을회관 신축, 증축,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따른
세출 발생
2. 비용추계의 전제
 - 1) 신축 : 6억원 정도(30평 기준)
 -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 33개소 정도(구미시 소유 4개소, 마을회 소유 29개소,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포함)를 대상으로 연 1개소 신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추계한다.
 - 공사비 4억 9,000만원, 용역비 3,000만원, 철거비 9,000만원
 - 2) 증축, 리모델링 : 2억원(1개소 당 1억원)
 -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 71개소를 대상으로 연 2개소 증축,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계한다.
 - 3) 보수 : 1억원(1개소 당 2천만원)
 - 보수 주기는 10년에 1회 정도로 추정하여 연 5개소로 반영하여 추계한다.
 - 4) 비용은 최근 5년 평균 표준건축비 상승률 3.96%를 매년 적용한다.
 - 5)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○ 세입	0	0	0	0	0	0
	소계(a)	0	0	0	0	0	0
세출	○ 신축	600,000	623,760	648,460	674,139	700,834	3,247,193
	○ 증축, 리모델링	200,000	207,920	216,153	224,712	233,610	1,082,395
	○ 보수	100,000	103,960	108,076	112,355	116,804	541,195
	소계(b)	900,000	935,640	972,689	1,011,206	1,051,248	4,870,783
□ 총 비용(a-b)		900,000	935,640	972,689	1,011,206	1,051,248	4,870,783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 비		0	0	0	0	0	0
도 비		0	0	0	0	0	0
시 비		900,000	935,640	972,689	1,011,206	1,051,248	4,870,783
민 간		0	0	0	0	0	0
기 타		0	0	0	0	0	0
합 계		900,000	935,640	972,689	1,011,206	1,051,248	4,870,783

5. 부대의견 : 마을회관 신축, 증축, 리모델링, 보수 예산은 추정비로서
신청수요에 따라 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○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 오수아(☎054-480-3917)